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1 기본 현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사업위치											
총사업비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text-align: left;">총</td> <td style="text-align: center;">(국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사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보조율)</td> <td style="text-align: center;">(구비)</td> </tr> <tr> <td>1,432천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432천원</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 %</td> <td></td> </tr> </table>	총	(국비)	(사비)	(보조율)	(구비)	1,432천원	1,432천원		100 %	
총	(국비)	(사비)	(보조율)	(구비)							
1,432천원	1,432천원		100 %								
사업내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										
사업형태	<input type="checkbox"/> 직접수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치단체 보조 <input type="checkbox"/> 민간이전 <input type="checkbox"/> 출연출자 <input type="checkbox"/> 민간위탁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시행주체	자치구청장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역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출연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경상	투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송임봉 2133-5435	이영호 2133-5393	박주희 2133-5380

2 예산 설명

□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5예산액 (A)	2016예산(B)	증감 (B-A)	(B-A)*100/A
계	(x658) 658	(x2,935) 2,935	(x1,432) 1,432	(xΔ1,503) Δ1,503	(xΔ51) Δ51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x658) 658	(x2,935) 2,935	(x1,432) 1,432	(xΔ1,503) Δ1,503	(xΔ51) Δ51

□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3 사업 설명

□ 사업목적

- 농업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장의2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사업내용

- 위 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발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발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규 모 : 25농가 35,790㎡
- 사업기간 : 2012년~(계속)
- 사업내용 :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발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발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총사업비 : 1,432천원(국비 : 1,432천원)

□ 추진경위

- '14.12. : '14년도 발농업직접지불사업 지침 통보
- '15.01.~'15.05. : 자치구별 신청 접수
- '15.05.~'15.11. : 이행사항 점검
- '15.12. : 보조금 교부

□ 중점추진사항(사업추진의 필요성)

- 농업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함

사업추진절차

- 집행절차 지침 통보(농식품부→서울시→자치구) → 농업인 신청(농업인→자치구) → 이행사항 점검(농진청 등) → 보조금 교부(농식품부→서울시→자치구) → 보조금 집행(자치구) → 정산? 보고(농식품부←서울시←자치구)
- 계약체결

2016년도 추진일정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
계		1,432	
계획집행정산	2016.01~2016.01	1,432	지침 시달, 대상자 선정, 이행점검 등

4 사업효과

최근 3년 추진실적

2013년도	○ 43천원 지급(국비:43천원) - 1개 자치구 1,069㎡ 1농가
2014년도	○ 658천원 지급(국비:658천원) - 5개 자치구 25농가 지원
2015년도	○ 2,935천원 지급예정(국비:2,935천원) - 6개 자치구 82농가 지원

향후 기대효과

- 생산이 감소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3	(x136) 136	(x-) 0	(x-) 0	(x136) 136	(x43) 43	(x-) 0	(x93) 93
2014	(x136) 136	(x-) 0	(x-) 0	(x658) 658	(x658) 658	(x-) 0	(x-) 0

참 고 자 료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상담)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심재규 사무관 김재학	044-201-1771 044-201-1778
(지자체 업무담당자 상담)	”	사무관 정영수	044-201-178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밭농업 직접지 민원상담)	농업경영정보과	상담지원 콜센터	1644-8778 1670-8002

I. 사업개요

1. 목 적

-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장의2

3. 성과목표 및 지표

- 밭농업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밭작물 재배농가의 농가소득보전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 방식
		‘12	‘13	‘14		
▪ 신청 대비 적격비율	85.0	64.2	80.1	90.9	2015.12	신청면적 대비 지급적격면적을 백분율화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62,365	72,577	134,731	192,931	228,309
국 고	62,365	72,577	134,731	192,931	228,309
지방비	-	-	-	-	-

II.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급대상농지

- 발농업고정직접지불금 :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로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갖추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
 - 단,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발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 ①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이나, ②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발농업이 중단된 경우
- 발농업직접지불금(26개 품목)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田)(이하 ‘공부상 밭[田]’이라 한다)인 토지로서 해당 연도에 발농업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밭
- 발농업직접지불금(논 재배 식량·사료작물) : 지목과 상관없이 논농업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것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 중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
 - ※ 발농업고정직접지불금 등 발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다음 농지는 발농업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①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 ②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 ③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 ④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다만,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1년 이상 발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다만,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영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발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 ⑥ 영 제40조의10제1항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다만 신청제한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받고정직불금의 경우는 등록제한기간을 5년으로 한다.
- ⑦ 타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받는 농지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논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조건불리보조금을 받는 농지(받고정

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포함)

-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경관보전보조금을 받는 농지(받고정 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제외)

※ 동일 필지에 대하여는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과 논농업고정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음. 다만, 논 이모작 재배(식량·사료작물) 필지의 경우는 밭농업 보조금과 논농업고정직접지불금 중복지급 가능

2. 지급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단,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같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연접한 시·군·구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연접한 시·군·구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③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 밭농업에 종사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것을 말함
 - * 일부 위탁의 범위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함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경우로 같은 시기에 농지를 분할하여 경작하는 때에는 신청자 별

로 경작하는 농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 포함) 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각각 신청 가능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경우로 동계와 하계로 시기를 나누어 경작하는 때에는 공동 소유(경작)자간 합의를 통해 동계, 하계중 시기를 선택하여 연간 1회만 신청 가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 * 휴경면적은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타 시·군·구에 등록신청한 면적은 포함됨

3. 신청자격

○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동 법 제6조에서 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상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 ② 2012년부터 밭농업고정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기간 중 밭농업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1년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 ㉠ 농업인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에 대하여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밭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 ㉡ 농업법인 :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에 대하여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밭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 ③ 밭농업고정직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에 밭농업고정직불금을 등록한 자가 사망, 뇌사판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 그

밖에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해당농지에서 밭농업에 계속 종사(휴경 포함)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사망 등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 단, 다음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기본법상 농촌에 주소를 두거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이어야 함

* 불가피한 사유(예시) : 고령, 중환, 수감으로 농업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밭농업직접지불금(밭재배 26개 품목, 논재배 식량·사료작물)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른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제40조의4에서 정하는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4. 지원대상

○ 대상품목

-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 모든 밭작물('12~'14년 연속하여 밭작물 재배 농지, 화훼·인삼·담배·뽕나무·과수·묘목을 재배한 농지도 해당됨), 신청 연도는 휴경도 지급 대상임

- 발농업보조금 지급대상(아래 표) : 밭재배 26개 품목, 논 재배 식량·사료작물

동 계	하 계	논 재배(전년 10월~6월) 식량·사료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 잡곡(기장, 피, 울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춘파), 쪽파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울무, 감자, 고구마

*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옥수수 등과 같이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재배하는 품목의 경우 위 대상품목에 해당하면 재배목적과 관계없이 발농업보조금 지급대상

○ 조사료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귀리, 자운영, 알팔파, 기타 농산물 표준코드기준 조사료(사료작물,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

* 사료작물 : 옥수수, 수단그라스, 호맥, 귀리, 사료용 유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 목초류 : 알팔파,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Birds foot trefoil(버즈풋트레포일), 오차드그라스, Tall fescue(톨페스큐), 티모시, Perennial rye grass(페레니얼라이그라스), 켄터키블루그라스, Redtop(레드톱), Reed canarygrass(리이드 케너리그라스), Meadow fescue(메도우페스큐), Bromgrass(브롬그라스)

○ 밭재배 26개 품목, 논 재배 식량·사료작물의 경우는 대상품목 재배면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

- 같은 시기에 2개 이상의 대상품목을 섞어지을 경우 재배면적의 합을 측정
- 동일 필지라도 대상품목이 아닌 품목을 심거나 농지의 일부를 휴·폐경하는 경우 타 품목 재배면적, 휴·폐경면적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

* 한 필지 내에서 같은 시기에 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혼·간작시 대상품목의 재배면적 점유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며, 지급대상 면적은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점유 비율에 따라 산출

○ 동일 농지에 대상품목 중 동계 및 하계작물을 2회 이상 재배하는 경우에는 중복지급은 배제하고 연간 1회만 지급

* 예 : 동일 필지내에 동계에 밀을 재배하고 하계에 콩을 재배하는 경우, 밀과 콩 중 하나의 품목 재배면적에 대해서만 발농업보조금을 지급

- 이행점검 결과 동일필지내에서 경계를 명확히 달리하여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중복되지 않게 재배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발농업보조금 지급 가

능

- 전년도에 대상품목을 식부하여 다음연도에 수확하는 동계작물의 경우 수확년도를 기준으로 밭농업보조금을 지급
- 시설에서 재배한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단, 밭고정직불금 지급 대상에는 시설도 포함되며, 해당 연도 휴경시에도 지급)
 - 시설이란 온실, 비가림시설 등과 같이 유리, 비닐 등으로 피복하고 사람이 들어가 농작업이 가능토록 설치한 시설을 말함
 - 터널시설과 같이 사람이 들어가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시설에 미포함

5. 밭농업직불금 지급요건(밭재배 26개 품목만 해당)

-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 농약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토양화학성분 기준

6. 지원형태 및 기준

- 지급단가
 - 밭고정직불금(모든 밭작물) : 1만제곱미터당 25만원(m^2 당 25원)
 - 밭농업직불금(밭재배 26개 품목) : 공부상 지목이 '밭'인 농지에 해당 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 1만제곱미터당 40만원(m^2 당 40원)
 - * 밭농업고정직불금 25만원/ha을 포함한 금액
 - 밭농업직불금(논 재배 식량·사료작물) : 해당 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 1만제곱미터당 50만원(m^2 당 50원)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m^2) × 해당 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m^2)
 -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지급 상한 : 농업인 4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10만제곱미터.
단, 논 재배 식량·사료작물의 경우는 농업인 30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50만제곱미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 계획,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
-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및 설명회 등 개최

시·도(시·군·구), 농관원(지원, 사무소)

- 시·도(시·군·구)는 관련 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농업인대표 간담회 개최, 동계영농교육 등을 통한 홍보
 - ※ 타인이 경작하는 농지를 논농업 휴경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임차하여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도 임차가 가능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하여 발농업직불금(논 이모작)을 지급하므로 해당 농업인들이 임대차계약을 준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과 함께 발농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전년도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사전배부(집중 접수기간 세부일정 10일전 까지)
 - 신청서 배부 시 작성요령 동봉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과 협의하여 관할 읍·면·동별로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 지역여건에 따라 “공동접수센터”를 마을(법정/행정리)에 설치 가능
- 접수기간 중 읍·면·동장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은 협조하여 통합신청서를 공동으로 접수
 - 접수 시 첨부서류 등이 미비할 경우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읍·면·동장은 추후 일정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제출토록 조치(단 기간내에 추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 대상 선정 취소)
 - * 공동접수 시 직불금 첨부서류는 읍·면·동장이 최종 확인
- 접수증 배부

- 읍·면·동장 또는 지원장(사무소장)은 농업인들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접수할 때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별지 제20호 서식)을 발급(접수번호 기재 후 접수증 하단부를 절취하여 배부)
 - * 등록신청서 접수증 관리대장(별지 제19호 서식)에 접수여부 관리
 - 공동접수기간 경과 후에는 농업인 편의에 따라 읍·면·동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방문 신청
- 등록신청서 전산 입력(전송) 및 신청서 원본 보관
- 경영체등록정보 등록(변경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이 입력하고, 밭농업보조금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이 입력 후 전산으로 전송 원칙
 - 통합신청 및 집행기관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신청서 원본 중 소관별로 농관원(1,2,4,5,6)과 지자체(3+등록번호, 이름 등 추가)가 각각 나누어 보관
 - * '14년의 경우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관이 원본을 복사후 해당 기관에 인편 또는 우편 등으로 제공하였음
- ① 공동 접수시 : 공동접수센터에서 소관 기관별 신청서 원본을 나누어 보관 (지자체 3번/농관원 1-2-4-5-6번) 및 등록
 - ② 개별 접수시 : 지자체는 3번 항목+첨부서류 등 등록 후 보관, 나머지는 농관원으로 이송
 - * 농관원은 1-2-4-5-6번 항목 입력·보관, 3번+첨부서류 지자체 이송
 - ③ 신규자 : 신규 경영주는 농관원에서 일괄 접수·등록
 - ⇒ 경영체 DB에 없는 경영주 외 농업인/농지에 직불금 신청시 지자체는 등록신청서의 1, 2, 3번 항목을 입력(수정) 후 농관원에 전송 및 직불금 업무 동시 추진, 농관원은 변경 접수, 확인 후 등록
- 첨부서류는 지자체가 보관(농관원 접수 시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송부)하되, 농지의 관할지역이 다른 경우는 면적이 제일 큰 읍·면·동에 송부
 - 지자체는 3번 항목 변경, 추가시 전산등록 후 농관원 전송 → 농관원은 변경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접수/확인 → 지자체는 심사/최종 선정시점에서 경영체DB와 직불금 항목의 이상여부를 대량검증 확인 후 직불금 지급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이 밭농업보조금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이송하거나 시스템 등으로 전송(변경등록 신청의 경우도 이와 같음)

- 책임소재 : 직불금[지자체], 이외 항목[농관원]

농업인등 : 등록신청서 제출

- 발농업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에게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의함]
 - 등록신청 기간 : (동계) 2015. 3. 2. ~ 3.31. (하계, 밭고정) 2015. 3. 2. ~ 6.15.
 - 동계작물의 경우는 '15. 3.31.까지 등록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작부체계상 특수성이 있어 동·하계작물 구분에 맞지 않는 품목이 등록신청일 현재 재배중인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등록신청을 받을 수 있음
 - * 농업인등은 농지의 매매 및 임대 등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변경 신청(동계 6월 15일, 하계·밭고정 9월말까지)을 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한국농어촌공사(지사)에 이행점검 반력을 요청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이행점검을 재 의뢰

<등록신청 방법>

- 농업인등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밭직불 보조금 등 신청 사항 포함됨)를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에게 제출. 단, 농촌 외의 주소를 둔자의 경우 추가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
 - * 읍·면·동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서는 농업인등이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및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전화, Fax, 직접방문 등)
 -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구(자치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 * 등록신청하는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도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
 -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시·군·구의 읍·면·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에게 등록신청
 - 등록신청 시 첨부서류(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 가능)

- ㉠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및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밭농업에 1년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농지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 ㉡ 해당 농지의 경작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작사실확인서(이 경우 농지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와 생산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그 밖에 밭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
 - ㉢ 신청인이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증명 관련 서류, 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신청 농지를 무단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 농촌외의 주소를 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다만, 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연접한 시·군·구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연접한 시·군·구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면적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계약서 등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 등록 신청하는 직전 연도 또는 당해연도 판매금액

⇒ 등록신청자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서류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 제출

- APC에 농산물을 판매한 경우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 농산물을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APC 공식기관명의 직인 찍힌 확인서
-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발작물 매입실적
-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간이 영수증은 제외

㉢ 발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현재 주소지)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발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 1년 이상 거주 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 1년 이상 경작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발작물 판매 영수증, 발작물 등 계약재배 영수증, 1년 이상 경작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농지소재지 거주자 3명 확인) 등

※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실경작 입증기준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 :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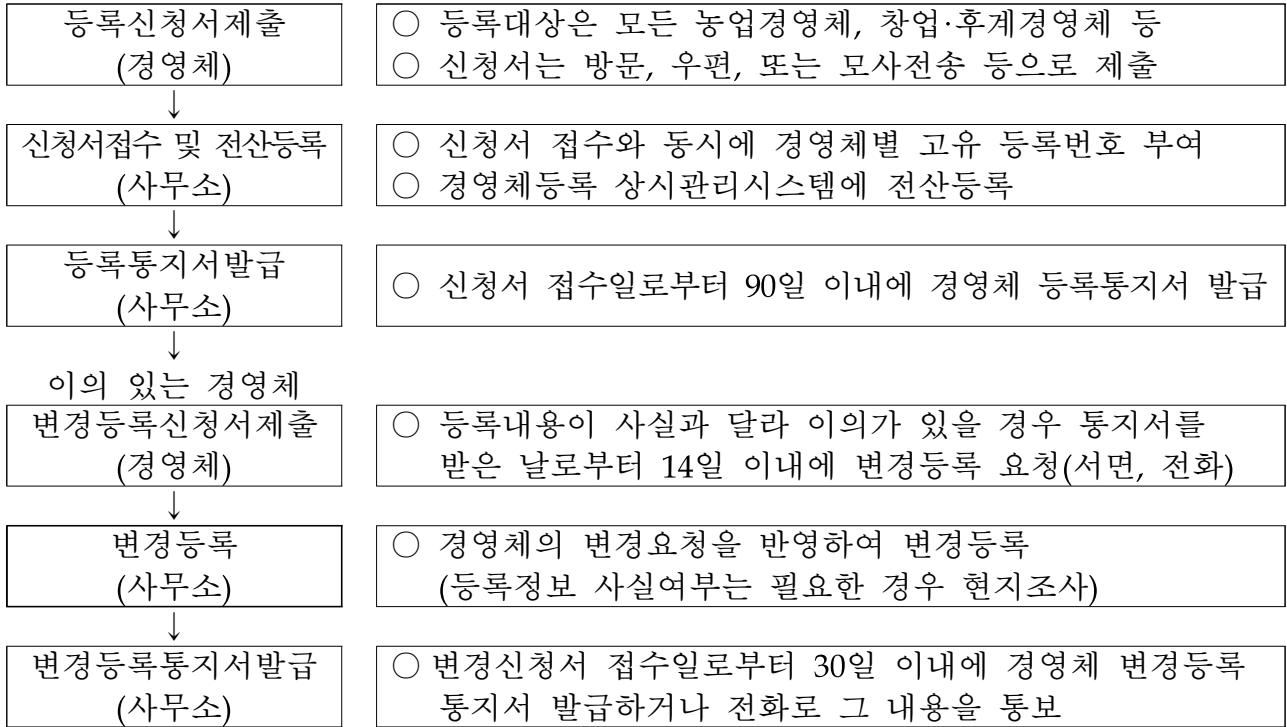
< 구비서류 >

구 분	필요 서류	비 고
<p>① 대상농지 관련</p>	<p>① '12~'14년 기간 발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빙 - 농지소재지의 마을 이장과 거주자 3명이 서명한 확인서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이외의 자료 한정 - 농업소득법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p> <p>② 농업소득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발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경작 계약서, 간척지 사용료 납부자료, 토지대장,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중 1개 - '12~'14년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발농업이 중단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지정리 편입확인서, 공구별 준공처리 확인서, 재해보상 및 복구비 지원 확인서 등 중 1개</p>	<p>'12~'14년까지 연속하여 발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와 '12~등록 연도까지 발농업 재배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는 생략</p>
<p>② 지급대상자 관련</p>	<p>① 농업소득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도시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②-② 부분)의 증빙서류 참고</p> <p>㉠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증서류</p> <p>㉡ '12년부터 1년 이상 발농업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 제곱미터 이상 경작 농업인 및 5만제곱미터 이상 경작하는 농업법인(휴경 면적은 산정 제외)의 경우 그 증빙서류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p> <p>㉢ '12년부터 1년 이상 발농업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인 경우 그 증빙서류(등록신청자 명의의 다음 서류 중 1개) - APC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또는 APC 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판매 증명 확인서 -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 등(간이영수증 제외) -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서류 등</p> <p>㉣ 발농업 고정직불금 대상자의 사망(뇌사 포함), 고령, 중환, 수감으로 인한 승계의 경우 그 증빙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 판정서, 고령으로 인한 영농승계 확인서(이장 등), 중환에 대한 진단서, 수감확인서 - 직계존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으로 1년 이상 동일주소 임을 증빙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치료 목적으로 등록자가 주소를 이전한 경우 : 이장 확인서, 입원 증명서 등 - 농업인증명 : 1천제곱미터 농지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등을 증명하는 서류(1개 선택)</p>	<p>전산확인이 안되는 경 우만 제출 면적 계산 : 타 시·군· 구 농지가 있는 경우 합한 면적</p> <p>승계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계속하여 지급 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 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기본법상 농촌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이거나,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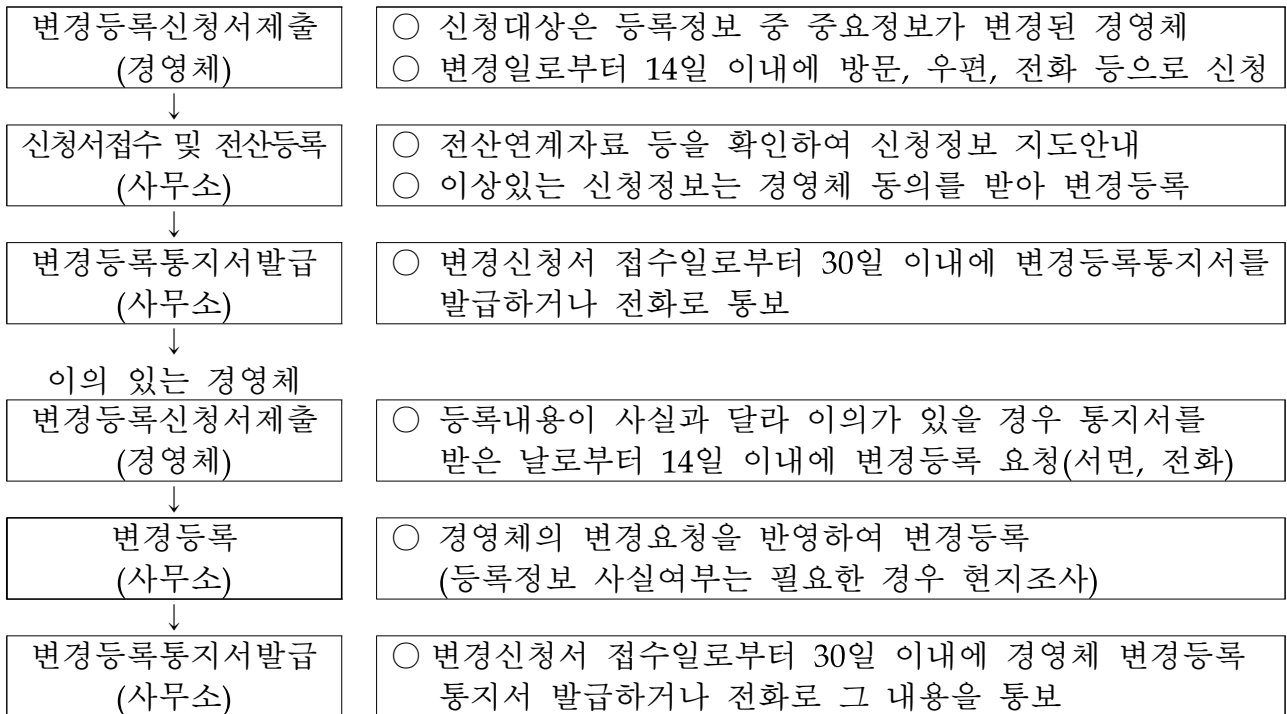
	<p>② 도시거주자(기본법상 농촌 외 거주) : 다음 중 1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작 면적 증빙(연접 시·군·구 포함) : (신청자 명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 농산물 판매액 증빙(등록신청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 판매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C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또는 APC 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판매 증명 확인서 ·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간이영수증 제외) · 농협,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 등(간이영수증 제외) ·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서류 등 - 관내 도시 거주자 증빙 : 1년이상 관내 거주(주민등록등본 등)와 1년 이상 경작(신청자 명의 '14년도 영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1년 이상 경작확인서 등) 증빙 	
<p style="text-align: center;">③ 경작사실 증명 관련</p>	<p>① (경작사실 확인서) 관내 및 관외 경작자 모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경으로 신청하는 필지는 경작사실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p>② (영농기록) 관내 경작자는 다음의 1개 이상, 그 외의 자는 2개 이상의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의 판매 증빙 서류(②-①-㉠ 및 ③-②의 농산물 판매액 증빙 서류 참고) ㉡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행정기관(농협)에서 농자재를 공급받은 확인서 등) ㉢ 종자·육묘 등의 구매 증빙 서류(정부보급종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APC와 농업인 간 계약서, 일부위탁 계약서 등) ㉤ 기타 증빙 서류(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업시설 설치 영수증, 발농업에 이용되는 농기계 구입 영수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수증 등 모든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의 등록신청 직전연도 또는 당해 연도분만 인정됨 *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영농자재·종자 구입 등 영농기록은 해당 읍·면장 또는 이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 * 2개 이상의 서류란 ㉠~㉤ 5개 중 2개(예 : ㉠의 판매액 증빙 서류와 ㉡의 농자재 구매 증빙서류 각 1개씩 2개)를 의미함 	<p>'14년과 신청대상 농지가 같고, '14년과 ①주소지가 같거나, ②관내에서 주소지 변동이 있었거나, ③'14년에 관외 경작자였다가 주소를 이전하여 관내경작자가 된 경우는 증빙서류 면제</p> <p>*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확인가능하면 생략 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④ 기타 서류</p>	<p>①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p>②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원칙, 권장),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임차비용으로 제공한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발농업직불금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유지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서류 반드시 제출 	<p>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신청인이 등록신청서에 서명)</p>

농업경영체(AgriX)등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방법(농업경영체콜센터 : 1644-8778)



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방법 (농업경영체콜센터 : 1644-8778)



2. 등록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및 정보공개 단계

가. 등록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 또는 읍·면·동장

○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 (동계) 2015. 3. 2.~3.31, (하계, 발고정) 2015. 3. 2.~6.15.

- 등록신청서 전산 입력기간 : (동계) 2015. 3. 2. ~ 4. 7.
(하계, 밭고정) 2015. 3. 2. ~ 6.20.

나.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 여부 확인

다.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 ①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 등록신청서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한 자는 농식품부에서 일괄 확인 예정
- ②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 ③ 등록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라. 농촌외의 주소(주된 사무소)를 둔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의 증명, 등록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및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등 확인

마. 등록신청자 정보공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구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 정보공개 기간 : 하계작물 등록신청 전산마감 종료 후 30일 이내
- 정보공개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구의 홈페이지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이의신청 대상 :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밭농업보조금 신청자에게 알려야 함
 - * 추가 등록신청한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이행점검 기관에 통보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3. 지급대상자 선정단계

지자체(읍·면·동)

가. 현지(서면)조사 및 필요시 심사위원회 심사 실시

- 조사 및 심사기간 : 등록증 발급 전 까지
- 서면조사 등

- 발농업보조금 신청인이 발농업에 종사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한 농지면적, 경작여부 등에 대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같은 시·군·구 내에서 2개 읍·면 이상에 등록신청 농지가 있는 경우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
 - 다만, 다른 읍·면·동의 농지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농지면적·거리 등을 고려 농지소재지 읍·면에 현지조사를 의뢰
 -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읍·면에서는 등록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받아 조사에 활용
- 심사위원회 심사
 - 위원장 : 읍·면·동장
 - 위원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 읍·면·동 관할 리·통의 마을 대표
 - 해당 읍·면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촉할 수 있다.
 - 발농업보조금 신청자의 발농업 종사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 심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할 때
 -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임기 : 2년(재임 가능)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사위원회는 신청자의 발농업 종사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사항은 집중 심사
 -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경작자 확인
 -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등록신청자의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현지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에서 등록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AgriX시스템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계) 4.10.까지, (하계, 발고정) 6.30.까지 제출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가. 발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발급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등록증 발급 : (동계) 2015. 4.10.까지, (하계, 발고정) 2015. 6.30.까지
- 발급요건 : 등록신청서에 대해 읍·면·동장이 AgriX에서 확정을 완료한 경우
 - 지급대상 농지의 적격여부
 - 지급대상자의 적격여부 등 확인
 -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
- 지급대상자 등록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등록
 - 등록증번호는 시·군·구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시·군·구에서는 기 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하지 못함
 - * 읍·면·동에서는 등록대장을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

- 지급대상자 등록증(별지 제5호 서식) 발급
 - 등록증 발급대상자 현황을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등록증 발급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지급대상제외자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하고, 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별지 제7호 서식)
- 등록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로 등록신청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지자체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등록신청자가 지급대상자 명부에서 누락된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지급대상자 명부에 추가 등록하고, 그 등록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이행점검을 실시
 - 신청농가의 대상품목 재배여부, 재배면적, 공부상 지목 일치 여부 등 점검
 - 등록증 내용과 현지점검 결과가 다를 경우 「밭농업보조금 신청 현지조사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으로 확인하고, 부재시에는 전화녹취 및 현장자료로 사진 확보
 - 신청인이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수확이 완료된 경우에는 조사자의 현지조사 확인으로 갈음하고 현장자료로 사진 확보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에 대한 종합소득금액 확인(국세청)
 ◆ 지번 확인 등을 통해 중복신청, 신청 면적, 주소 등 최종 확인

- ⇒ 등록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산시스템에서 확정 및 관인 날인(생략 가능), 읍·면·동에서는 등록증을 출력하여 농업인등에게 발급
- 등록증은 향후 이의신청 등의 근거 서류가 되므로 신청자에게 반드시 도착해야 함

나. 등록된 농지 등 이행사항 점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

- 의뢰 기간 : (동계) 2015. 4.10.까지, (하계, 밭고정) 2015. 6.30.까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AgriX시스템에 사업대상 농지(농가)를 확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해당 사무소, 및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이행점검을 시스템으로 의뢰

4. 등록된 농지 등 이행사항 점검단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 표본농가 선정 및 대상품목, 면적확인 등 현지 조사

- 등록된 농지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전년 10월~6월 논에 재배하는 식량·사료작물)에 위임한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은 표본농가를 선정(모집단의 50% 이상, 발매배 26개 품목의 경우는 30%이상)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달
 - * 표본농가 선정 및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이 정함. 다만, '15년도 신규 신청지는 선 순위로 조사하고, '14년도 직불금 지급 대상지는 후 순위로 표본 조사(표본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의심 가는데 중심으로 샘플 선정)
- 점검기간 : (동계) 2015. 4.13. ~ 6.15, (하계, 밭고정) 2015. 7. 1. ~ 9.30.
- 점검대상 농지 : 밭농업직불제 신청농가 중 표본으로 선정된 농가의 농지
 - 농관원 지원 또는 시·군 사무소와 및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는 AgriX 입·출력 담당자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AgriX시스템으로 전송 받은 사업대상 농지(농가)의 「밭농업보조금 신청 현지 조사표」(별지 제8호 서식)를 출력하여 현장 점검
 - * 농지가 관할지역 내인 경우는 대상농지 현지조사 → 조사결과 전산입력 및 확정
 - * 농지가 관할지역 밖인 경우는 농지 소재 사무소 출력 의뢰 → 관할사무소는 대상농지 현지조사 → 조사결과는 의뢰한 사무소에 통보 → 조사결과 전산입력 및 확정
- 점검사항
 - 등록 신청서의 지목, 품목, 재배면적에 대한 현지 확인 등
 - 밭고정의 경우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 현지 확인
 -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 ② 이웃 농지와 구분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 ③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 * 실 경작이 의심되는 등록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영주 면담 실시
- 점검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은 세부점검계획 수립

- 항공사진 지적도, 태블릿 PC 등을 활용하여 발농업보조금 신청농가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 대상품목 재배여부, 재배면적, 공부상 지목일치 여부 등 점검
- 등록증 내용과 현지점검 결과가 다를 경우 「발농업보조금 신청 현지 조사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으로 확인하고, 부재시에는 전화녹취로 대체 또는 현장 사진 촬영 보관
- 신청인이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수확이 완료된 경우에는 조사자의 현지조사표 확인으로 갈음하고 현장자료로 사진 확보
- 점검결과 입력 : 점검결과는 AgriX시스템에 입력
 - 점검결과를 AgriX시스템에 항목별로 입력한 후,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송
 - 입력 결과를 출력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한국농어촌공사는 본사) 보고, 본원(본사)에서는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9호 서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약잔류검사(영 제40조의7제2항제2호에 근거)

- 주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약잔류검사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시·군별 농약잔류검사 계획을 수립 시행
- 농약잔류검사 대상 : 발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의 대상품목(공부상 밭에 재배하는 26개 품목만 해당)
 - 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약잔류검사 의뢰(AgriX시스템으로 전송)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은 AgriX시스템 입·출력 담당자 지정 운영
 - 농약잔류검사 조사표본은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마을별로 고루 분포 되도록 선정
- 검사기간 : (동계) 등록증 발급 후~6.30, (하계) 등록증 발급 후~10.31.

- 시료 채취
 - 수확 10일전에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되 발의 형상을 감안 Z자형 또는 W자형으로 구분하여 최소 6개소 이상의 지점을 무작위로 선정
- 농약잔류검사 방법
 - 농약 잔류검사용 시료는 신속하게 관할 분석기관에 송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농약잔류 분석기관의 장은 분석 종료 후 그 결과를 해당 사무소에 통보
- 농약잔류검사 결과 판정기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 농약 잔류검사결과 통보 및 조치
 -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약 잔류검사가 완료된 후 검사 결과를 AgriX에 입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별지 제10호 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관원 사무소로부터 통보된 농약잔류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필지는 “발농업보조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별표1)”에 따라 조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약잔류검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10호 서식)
- 기타사항
 - 시료수거는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농식품부 고시), 시료관리는 「농산물 안전성조사 실시요령」(농관원 예규)에 따라 처리

농업기술센터 : 토양검사(영 제40조의7제2항제3호에 근거)

- 주관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가 없는(23개 시·군) 시·군은 도 농업기술원(센터)에서 수행
 - 농촌진흥청장은 “발농업 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세부시행지침”을 수립·시행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체 “발농업 직접지불제 토양검사계획”을 수립·시행
- 검사항목 :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륨 성분을 분석하여 적합·부적합 판단
- 검사기간 : (동계) 등록증 발급 후~6.30, (하계) 등록증 발급 후~10.31.
- 검사대상 농지 : 발농업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지(공부상 밭에 재배하는 26개 품목 재배농지만 해당)
 - 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사의뢰(AgriX시스템으로 전송)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AgriX시스템 입·출력 담당자 지정 운영

○ 토양검사 표본선정

- 시·군별 토양검사 표본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하되 “밭농업 직접지불제 토양검사세부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시행

* 표본 선정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표본설계

○ 토양검사 시료채취

- “밭농업 직접지불제 토양검사세부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시·군 실정에 알맞은 시료채취 중점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시료 채취 대상 농지로 선정된 필지에서 시료 채취

○ 토양검사 방법

- 농촌진흥청의 “밭농업 직접지불제 토양검사세부시행 지침”에 근거하여 실시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 함량

구 분	유기물 함량 (g kg ⁻¹)	유효인산함량 (mg kg ⁻¹)	치환성칼리함량 (cmol ⁺ kg ⁻¹)
일반 농지	11~50	800이하	2.0이하
제주도	- *	800이하	2.0이하

※ 제주도의 토양특성상 유기물 항목 제외, 농촌진흥청 표준분석법에 의한 분석결과 적용

○ 토양검사 적합여부 판단기준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 범위내(1차 토양검사) : 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초과하여 벗어날 경우(2차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미달하여 벗어날 경우(2차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검사 판정기준

- 1차 토양검사결과 2개성분 이상이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시비지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함
- 2차 토양검사는 1차 검사결과 특별관리를 받은 해당필지를 포함해서 토양검사결과 2개 성분 이상이 부적합시 지급제한기준 적용

○ 토양검사 결과 통지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1차 특별관리 및 2차 토양검사 결과를 10.31일까지 AgriX시스템에 입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별지 제11호 서식)
- 농촌진흥청에서는 시·도의 검사결과를 취합 농식품부에 보고(별지 제11호 서식)
 - * 통보시 검사결과를 1차 특별관리, 2차 부적합으로 표시하여 특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명단을 통보(특별관리 또는 부적합 농가가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통보)
 - * 1차 특별관리 및 2차 부적합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토양관리처방서를 발급하여 시비지도 강화

○ 토양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통보된 토양검사 결과 부적합 판명된 농업인에 대해서 “발농업보조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별표1)”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5. 이의신청 단계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이행점검 결과를 발농업보조금 신청인에게 이행점검 완료 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 이행점검결과 통보 : (동계) 2015. 6.16. ~ 2015. 6.23.
(하계, 밭고정) 2015.10. 1. ~ 2015.10. 8.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업인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서면(별지 제18호 서식)

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재조사 요청

- 이의신청 기간 : (동계) 2015. 6.24.~ 7. 3.

(하계, 밭고정) 2015.10.12.~10.23.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농지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수정 입력 후 재전송

6.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자금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에서 보고한 밭농업보조금 소요액을 시·도에 배정 통보

시장·군수·구청장 : 밭농업보조금 지급

○ 지급시기 : 2015년 12월

○ 지급요건

-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농약 및 화학비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공부상 밭에 재배하는 26개 품목만 해당)할 것

○ 금액산정 : 지급단가(원/㎡) × 해당 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밭고정직불금(모든 밭작물) : 1만제곱미터당 25만원(㎡당 25원)

- 밭농업직불금(밭재배 26개 품목) : 공부상 지목이 ‘밭’인 농지에 해당 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 1만제곱미터당 40만원(㎡당 40원)

* 밭농업고정직불금 25만원/ha을 포함한 금액

- 밭농업직불금(논 재배 식량·사료작물) : 해당 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 1만제곱미터당 50만원(㎡당 50원)

○ 지급 상한 : 농업인 4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10만제곱미터.

단, 논 재배 식량·사료작물 재배의 경우는 농업인 30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50만제곱미터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정된 자금을 해당 시·군·구에 송금

- 시장·군수·구청장은 송금된 자금을 지급대상자(등록자)의 계좌에 입금
 - 통장입금시 농업인이 발농업보조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농림부발직불”이라는 용어를 보내는 이 이름으로 명기
 - 필요시 읍·면·동에 자금을 전도하여 계좌에 입금 가능
 - * 발농업보조금을 농업인등에게 입금하는 지정 사무소에서는 발농업보조금 등록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입금 조치
- 시·도지사는 지급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2호 서식)

7. 사후관리단계

가. 발농업보조금 수령자 명단공개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수령금액
- 정보열람 기간 : 발농업보조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 정보열람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 열람자의 의무 : 열람목적 및 개인정보 제공

나. 부당지급된 발농업보조금의 환수 등

- 부당지급금의 환수 : 영 제40조의10제1항에 따른 발농업보조금 환수의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 신청참여 제한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받고정직불금의 경우는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고 향후 5년간 등록제한
- 납입고지서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40조의10제1항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징수 사유가 발생하면 징수 대상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 * 납입고지서는 수령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
- 환수절차 : 반납고지서 발급(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납입)
- 시·도지사는 발농업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보고(별지 제13호 서식)

다. 사업추진상황 점검

-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사업추진상황을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

- 각 시·도는 시·군·구가 합동으로 관내 시·군·구 대상 교차점검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업추진상황을 하반기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도별 2~3개 시·군을 선정하여 시·도간 교차점검 실시
 - * 지급면적 초과신청, 타 발농업보조금 수령자의 중복신청, 지적불일치 필지 등

8. 보고 사항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발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 현황(별지 제14호 서식)
 - * (동계) '15. 4.30.까지, (하계, 받고정) '15. 7.24.까지
 - 발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제외자 현황(별지 제15호 서식) : '15.10.31.까지
 - 발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요청 (별지 제16호 서식) : '15.11. 6.까지
 - 발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결과(별지 제12호 서식) : '15.12.31.까지
 - 발농업직접지불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실적(별지 제13호 서식) : '15.12.31.까지
 - 발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제한 실적 보고(별지 제17호 서식) : '15.12.31.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사무소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통보)
 - 현지조사 결과(별지 제9호 서식) : '15.10.16.까지
 - 농약잔류검사 결과(별지 제10호 서식) : '15.10.31.까지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지사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통보)
 - 현지조사 결과(별지 제9호 서식) : '15.8.14.까지

9. 사업평가(성과측정) 및 환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직불금 지급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업실적을 평가

- 사업실적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시행지침 및 제도 개선 추진
- 평가결과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자체에 인센티브부여

IV.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수요조사 기간 및 기관 : '16. 1월 ~ 5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수요조사 농지 : 지급대상농지로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되고 '16년도 밭농업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지

2. 2016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도 밭농업보조금 지급신청은 3월~6월, 현지점검은 5월~9월, 보조금 지급은 12월 예정
- 신청자격
 - 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인 자,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0.1ha)미만인 경우와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신청자격이 없음
- 신청절차
 -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에게 제출

사업 추진 절차

업무흐름	시기 (하계기준)	주요내용
① 사업등록신청 *동계작물(3월)	('15.3~ 6.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농업직접지불제 시행계획 시달(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시·군·구, 농관원) · 농업인 등은 등록신청서 제출(읍·면·동장) · 읍·면·동 담당자는 AgriX를 통해 등록신청인의 농업경영체등록 사실여부 확인
↓		
② 신청자 정보 공개	('15.6월)	· 농림축산식품부, 농관원 및 시·군·구 홈페이지
↓		
③ 신청내용 현지(서면) 조사 및 심사 - 등록증교부 *동계작물(4월)	('15.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적부확인, 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 점검 대상자 확인을 위한 신청내용 점검·보완 · 등록 제한자, 농외 소득자 지급제한(증명서 제출자) 여부 확인(읍·면·동장) · 등록증 교부(시장·군수·구청장) *등록 제외자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보
↓		
④ 신청내용 현지조사 *동계작물(4~6월)	('15.7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뢰한 등록내용의 현장조사 실시(농관원, 농어촌공사) → 확인조사 결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
↓		
⑤ 등록내용 이의신청 *동계작물(6월)	('15.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관원(농어촌공사)의 이행점검결과 이의가 있는 농업인등은 지자체장에게 서면으로 재조사 요청 및 농관원 재조사 처리
↓		
⑥ 지급대상자 확정 및 통보	('15.10 ~11월)	· 지급대상자 확정(시장·군수·구청장)
↓		
⑦ 보조금 지급 *동·하계 작물, 고정	('15.12)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 입금(시·군·구)
↓		
⑧ 발농업보조금 수령자 명단 공개	(익년 1월)	· 농식품부, 농관원 및 시·군·구 홈페이지

< 별표 1 >

발농업보조금(26개 품목, 논 재배 식량·사료작물)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1. 일반기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지급제한기준	등록제한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영 제40조의10 제1항	등록된 모든 농지의 발농업 보조금 전부 미지급	3년
나. 영 제40조의4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발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발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	영 제40조의4 제2항	등록된 모든 농지의 발농업 보조금 전부 미지급 등록된 모든 농지의 발농업 보조금 전부 미지급	-
다. 영 제40조의7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 가) 농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나) 화학비료: 농촌진흥청장이 토양 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토양화학성분 기준 2) 1)가) 및 나)를 모두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	영 제40조의7	해당 농지의 발농업보조금 1/2 감액 해당 농지의 발농업보조금 전부 미지급	

< 별표 1-1 >

밭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행정처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한도를 초과할 수 없고, 등록제한 기간은 연 단위로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지급제한기준	등록제한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1호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 직접지불금 미지급	5년
나.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법 제14조 제1항제2호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 직접지불금 미지급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 직접지불금 미지급	
1)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위반사항	근거법령	지급제한기준	등록제한기간
<p>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p> <p>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p> <p>2)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p> <p>가) 이웃 농지와 구분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p> <p>나)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p> <p>3) 2)의 가)와 나)를 모두 위반한 경우</p>	<p>법 제14조 제1항제4호</p>	<p>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p> <p>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1/2 감액</p> <p>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p>	

[별지 제1호 서식] ※ 관계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 예정

농업경영체 [] 등록 변경 신청서 (농업인용)

※ 제6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11쪽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유형	농가(법인)고유번호	경영주 번호

1. 일반현황

①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국적	국내	주민등록번호	
			국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②주소	주민등록지(신고거소지)			
③영농이력	③-1 취업동기	[] 신규취업 [] 귀농 [] 겸업농			
	③-2 농업종사기간	년 개월 (농업 시작 연월 : 년 월)			
④직불금 등 수령계좌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⑤경영주 외의 농업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경영주와의 관계	영농이력		
				취업동기		농업종사 기간
				[] 신규취업 [] 귀농 [] 겸업농		년 개월(농업시작연월: 년 월)
				[] 신규취업 [] 귀농 [] 겸업농		년 개월(농업시작연월: 년 월)

⑥농업 외 종사자	성명	생년월일	경영주와의 관계	직종	⑦기타 동거인	성명	생년월일	경영주와의 관계

297mm×210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2. 농작물 생산

⑧ 농지 번호	농지소재지	지목		⑨경영형태			농지면적(m ²)						재배면적(m ²)			농지 소유주 성명	
		공부	실제	자경	공유	임차	공부상	⑩ 실제관리	미이용		⑪시설		품목명	노지	시설		
									휴경	폐경	시설명	면적					

3. 직불금 신청

⑧ 농지 번호	농지소재지	직불금 구분		⑫대상농지 여부			⑬지급신청 면적(m ²)							
				⑫-1 전년도 논 재배작물	⑫-2 기준연도 재배작물 (쌀 '98-'00, 밭 '12-'14)	⑫-3 기준연도 농업이용(관리) 여부 (조건불리 '02~'05 중 3년)	⑫-4 기준연도 이전 논(밭)농업 기간	전년도 지급면적		금년도 신청면적				
		쌀	고정					진흥 안	진흥 밖	진흥 안		진흥 밖		
			변동											
		밭								동계논 이모작	밭동계	밭하계	고정	소계
		조건불리								논	밭	과수원	초지	소계
		쌀	고정						진흥 안	진흥 밖	진흥 안		진흥 밖	
			변동											
		밭								동계논 이모작	밭동계	밭하계	고정	소계
		조건불리								논	밭	과수원	초지	소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횟수('05~'08)						회						

※ 거짓이나 부정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³⁹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 제40조의10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받은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향후 직불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가축 사육시설 및 규모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⑭시설현황				용도	⑮사육정보	
	시설면적(m ²)		경영형태			축종	사육규모(마릿수)
	공부	실제	자영	임차			

5. 유통 및 가공

(단위 : %, 만원)

	⑩주요품목		⑪판매금액	⑫판매처별 비율				⑬가공	품목	연간판매액
				정부공공비축	농협	민간도정가공업체	직거래			
생산 유통	식량									
	채소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과수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특용 약용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축산			도매시장	조합계통출하	민간계통출하	유통업체	기타			
기타			도매시장	산지경매	유통업체	직거래	기타			

6. 추정소득, 자산, 부채

(단위 : 만원)

추정소득 계	(1)추정농업소득				(2)추정농업외소득		※ 참고	
	구분	㉔농업조수입		㉕농업소득		구분		금액
		전체 평균액	경영체추정액	전체 평균액	경영체추정액			
소계					소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종합소득(국세청)</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20px;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복지급여(보건복지부)</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20px; margin-bottom: 5px;"></div> <p>* 추정농외소득은 종합소득과 복지급여 합산액 보다 작을 수 없음.</p>	
식량					㉖겸업소득			
채소					㉗급여소득			
과수					㉘자본소득			
특·약용					㉙이전소득			
축산					㉚비경상소득			
기타								

자산				부채				
계	㉛고정자산	㉜금융자산	㉝재고자산	계	㉞농업용	㉟가계용	㊱겸업용	㊲기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8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에 따라 직접지불금 및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란	
	읍·면·동장	농관원장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경영주를 포함한 신청인 농업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내지 제39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아래의 직접지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2. 신청인의 농지소재지,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토지대장·건축물(위반건축물) 대장·농지조서 정보 3.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4.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5. 농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6.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7. 농업인 면세유 배정 및 공급정보 8.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번호 등 법인정보 9. 토지(건물)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개별(공통)주택가격,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정보 10. 소득, 자산, 부채, 급여 등의 수급정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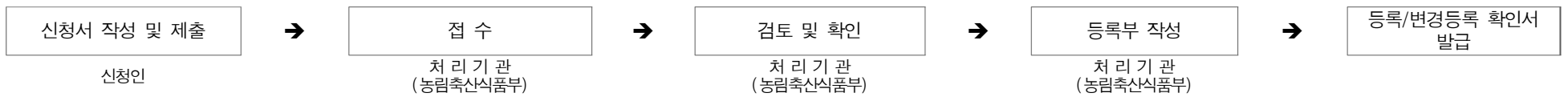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불사업 등의 농림축산식품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정부법」 제36조 내지 제39조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 []

- * 신청인은 위 직접지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신청 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신청 등록된 개인정보를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동의합니다.
- * 본 신청서에 작성한 자료와 농업경영정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자)	(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작성방법

- ①란의 경영주인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내에서 농·축산물 등의 경작·사육 활동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을 말합니다.
 - * 성명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이메일)을 적습니다.
- ②란의 주소는 주민등록지(외국인인 경우에는 신고 거주지)를 적습니다.
- ③란은 영농이력을 적습니다.
- ③-1란 취업동기는 신규 영농취업, 타직종에서 귀농, 겸업농으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 합니다.
- ③-2란은 농업종사기간(농업 시작 시점)을 적습니다.
- ④란은 신청한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정보를 적습니다.
- ⑤란은 경영주를 제외한 농업인(배우자 포함) 인적사항, 경영주와의 관계, 영농이력을 적습니다.
 - * 경영주와의 관계: ①배우자, ②미혼자녀, ③기혼자녀, ④손자녀, ⑤부모, ⑥조부모, ⑦ 미혼형제/자매, ⑧기타, ⑨고용인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영농이력 작성요령은 ③과 동일
- ⑥란은 세대원 중 농업외 종사자의 인적사항, 경영주와의 관계, 종사 직종을 적습니다.
- ⑦란은 세대원 중 무직자, 학생 등 비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경영주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⑧란은 신청농지 정보 작성 순서대로 1번부터 적습니다.
- ⑨란은 해당 지번의 경영 형태에 따라 자경, 공유, 임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자경: 농업경영체가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공유: 농업경영체가 본인과 타인의 공동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임차: 농업경영체가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 다만, 경영주, 배우자 등 동일 세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경”으로 적습니다.
- ⑩란은 실제 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 휴·폐경 면적)을 적습니다.
- ⑪란은 시설명을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비닐온실, 육묘장으로 구분하고 그 면적을 적습니다.
- ⑫란은 직불금 대상농지 여부 해당항목을 선택하여 해당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 ⑫-1란은 (밭농업직불금 중 이모작직불금 신청자만 기재)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 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만 품목명을 적습니다.
 - ⑫-2란은 기준연도(쌀: 1998~2000년/ 밭:2012~2014년)에 재배한 작물의 품목명을 적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논(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기타”로 기록합니다.
 - * 1998.1.1~2000.12.31 논 재배 작물 : 벼, 미나리, 연근, 왕골
 - ** 2012.1.1~2014.12.31 밭 재배 작물 : 보리, 콩 등 재배 품목
 - ⑫-3란은 조건불리직불금 기준연도(2002.1.1.~2005.12.31.)에 해당 농지를 농업에 이용 또는 초지로 관리하였을 경우 “○”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로 표시합니다.
 - ⑫-4란은 ⑫-2란에 기타로 기록한 경우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논 재배작물(벼, 미나리, 연근, 왕골)을 재배한 기간을 적습니다.
 - * ⑫-2,3,4란은 기존에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신청서 전산등록 시 전년도에 직불금 지급정보가 자동연계 되므로 기재 불요

작성방법

- ⑬란은 해당농지의 당해연도 직불금 신청 면적을 적습니다.
 * 쌀직불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면적으로 구분하여 적으며, 밭직불의 경우 신청면적을 고정, 밭동계, 밭하계, 동계논이모작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밭직불 신청면적 중 이모작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외의 형상과 기능을 갖춘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당해연도 6월까지 해당 농지의 휴경기간에 사료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등을 재배하는 경우 신청 가능
- ⑭란은 가축사육시설의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형태, 사용용도(축사 또는 부대시설)를 적습니다.
 ⑮란은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축종, 신청일 현재의 사육규모(마릿수)를 적습니다.
 ⑯란은 전년도에 생산하여 판매한 주요 품목을 적습니다.
 ⑰란은 ⑯란에서 판매한 품목의 전년도 판매금액을 적습니다.
 ⑱란은 ⑯란에 기재한 품목별 총 판매금액 중 판매처별 판매금액의 점유비율을 %로 적습니다.
 ⑲란은 농작물을 주원료로 가공하여 판매한 품목의 명칭과 판매금액을 만원 단위로 적습니다.
 ⑳란의 평균액은 등록된 농지정보를 바탕으로 자동계산(재배면적 × 재배품목 단위면적당 수량 × 가격)되며(신청인 작성 불요) 이를 참고로 경영체별 농업조수입 추정액(농산물판매금액)을 적습니다.
 ㉑란의 평균액은 ⑳란 - 경영비(또는 × 소득률)로 자동계산(신청인 작성 불요)되며 이를 참고로 경영체별 농업소득추정액을 적습니다.
 ㉒란은 농업 외 임업, 어업, 농산물 가공업, 농업서비스, 제조업, 등 기타 산업종사를 통해 얻은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㉓란은 농업 외 임금 및 다른집에 고용되어 지급받은 농업수입 금액을 적습니다.
 ㉔란은 임대수입(농지, 대지, 시설물, 대농구 등), 이자·배당수입, 유가증권 매매차익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㉕란은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공적보조금 : 농업보조금, 농업의 연금, 실업수당, 산재보험금, 기초연금 등
 * 사적보조금 : 출타가족 또는 친인척 등 타가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보조금
- ㉖란은 경조수입(축의금, 조의금),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이주민 주거대책비 일시금, 세금 환급금, 사례금 등 비정기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타가구로부터 얻은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㉗란은 토지, 건물, 기계·기구 및 비품, 대식물과 대동물등 고정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㉘란은 현금, 예금, 저축성 보험금, 궤돈, 빌려준 돈, 미수금, 선급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㉙란은 소동물, 미처분농축산물, 미사용구입자재 등 재고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㉚란은 생산성 자금 중 영농투자 확대(경지, 건물, 기계, 비료, 농약, 동식물, 사료구입 등)를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㉛란은 가계운영을 위한 생산성 자금(주거용 건물), 문화용품비, 관혼상제비, 의료비, 기타 생활비, 교육비 등 가계운영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㉜란은 생산성 자금 중 겸업활동(토지, 건물, 기계, 기타 겸업활동을 위한 지출)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㉝란은 토지, 건물 등을 빌려주고 받은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및 재산증식을 위한 생산성 자금(겸업 및 영농활동과 관계없이 재산증식을 위한 토지, 임야 등의 부동산 구입)을 위한 부채, 타인에게 채무 보증을 선 후 대신 갚게 된 부채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직불금 신청 구비서류

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면·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나.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다. 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라.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마.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바.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나. 가목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직불금 신청 구비서류

4.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1)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 2)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II. 발농업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해당 농지가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발농업보조금 지급 대상농지가 공부상 밭으로서 당해연도에 발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1) 시행규칙 제19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2. 신청인이 시행규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를 등록신청 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 III.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의 경우 경작자증명서류(임차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경영주를 포함한 농업인(이하 '본인'이라 함)과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본인의 등록 신청정보 및 경영정보 내용의 사실여부를 판단하거나, 사업시행기관(지자체 포함) 등 공공기관에서 정책(사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대법원, 중앙행정기관(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세청 등과 그 소속·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은행법』제8조제1항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보험업법』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허가 등을 받은 보험회사·『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민원처리기관'이라 함),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게 수집·이용·제공·조회 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경영주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쌀 등 직접지불제 시행으로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정과 맞춤형 농정 지원 - 맞춤형 농정지원/농업인 서비스 지원(문자메시지 발송 등)/지방농정 지원/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수집·이용할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식별정보 : 농업인·농업외종사자·기타 동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종, 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농지정보(취득, 처분, 말소, 전용 등) : 농지별 지목, 소유자, 면적, 정보보조·용자금 수급, 친환경인증정보 등 농업외소득·자산·부채정보 : 종합소득정보, 각종 연금 수혜정보, 부채정보 등 기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채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지실경작 여부, 정책자금 수령정보, 가축사육정보, 농(축)산물 유통·가공정보, 농기계 보유정보, 교육이수 정보, 면세유 배정정보 등 <p>※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p>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말소 또는 해지(해제)일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등록말소 후에도 직불금 수혜정보 관리등을 위하여 위의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농림축산식품부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귀 농림축산식품부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문자메시지 등 수신여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및 쌀 등 직접지불제 신청내를 비롯한 전반적인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수신받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직불금 수령 및 맞춤형 농정지원 등에 불이익을 받거나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법원,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산하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농협 등 금융기관, 공공기관, 민원처리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업 무 위 탁 기 관(자)에 대한 제 공 : 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탁기관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제공·조회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경영체(경영주를 포함한 농업인) 쌀직불제 등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농림사업 시행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직불금의 부정·중복 지원의 방지 등 맞춤형 농정지원 등을 위한 등록정보의 사실여부 확인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법령상 의무이행 등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식별정보 : 농업인·농업외종사자·기타 동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종, 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농지정보(취득, 처분, 말소, 전용 등) : 농지별 지목, 소유자, 면적, 정보보조·용자금 수급, 친환경인증정보 등 농업외소득·자산·부채정보 : 종합소득정보, 각종 연금 수혜정보, 부채정보 등 기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채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지실경작 여부, 정책자금 수령정보, 가축사육정보, 농(축)산물 유통·가공정보, 농기계 보유정보, 교육이수 정보, 면세유 배정정보 등 <p>※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p>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동의일로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말소 또는 해지(해제)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맞춤형 농정지원,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직불금 중복 지원 방지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공·조회동의 여부	귀 농림축산식품부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귀 농림축산식품부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직불금 수령 및 맞춤형 농정지원 등에 불이익을 받거나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별지 제1-1호 서식]

농업경영체 [] 등록 [] 변경 신청서 (농업법인용)

※ 제6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11쪽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유형	농가(법인)고유번호	경영주 번호

1. 일반현황

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주식, []유한)		
①법인현황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도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	
	법인소재지		
주요사업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농업서비스, []기타, 마을법인[]			

②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직불금 등 수령계좌	은행	계좌번호

③대표자 외 조합원(4인 이상) 또는 등기이사(5인 이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직책

④출자규모	영농조합	농업회사	출자자 수			출자금 총액		
			개인	법인	계	개인	법인	계
	조합원(대표자 포함)	농업인						
	준조합원	비농업인						
계								

⑤상용근로자 수	내국인	외국인
----------	-----	-----

2. 농작물 생산

⑧ 농지 번호	농지소재지	지목		⑨경영형태			농지면적(m ²)						재배면적(m ²)			농지 소유주 성명	
		공부	실제	자경	공유	임차	공부상	⑩ 실제관리	미이용		⑪시설		품목명	노지	시설		
									휴경	폐경	시설명	면적					

3. 직불금 신청

⑧ 농지 번호	농지소재지	직불금 구분		⑫대상농지 여부			⑬지급신청 면적(m ²)									
				⑫-1 전년도 논 재배작물	⑫-2 기준연도 재배작물 (쌀 '98-'00, 밭 '12-'14)	⑫-4 기준연도 이전 논(밭)농업 기간	전년도 지급면적		금년도 신청면적							
					⑫-3 기준연도 농업이용(관리) 여부 (조건불리 '02~'05 중 3년)		진흥 안	진흥 밖	동계논 이모작	발동계	밭하계	고정	소계			
		쌀	고정				진흥 안	진흥 밖								
			변동													
			밭							동계논 이모작	발동계	밭하계	고정	소계		
		조건불리							논	밭	과수원	초지	소계			
		쌀	고정				진흥 안	진흥 밖								
			변동													
			밭							동계논 이모작	발동계	밭하계	고정	소계		
		조건불리							논	밭	과수원	초지	소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횟수('05~'08)				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⁵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 제40조의10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받은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향후 직불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가축 사육시설 및 규모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⑫시설현황				용도	⑬사육정보	
	시설면적(m ²)		경영형태			축종	사육규모(마릿수)
	공부	실제	자영	임차			

5. 유통 및 가공

(단위 : %, 만원)

	⑭주요품목	⑮판매금액	⑯판매처별 비율					⑰가공	품목	연간판매액
			정부공공비축	농협	민간도정가공업체	직거래	기타			
생산 유통	식량		정부공공비축	농협	민간도정가공업체	직거래	기타			
	채소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과수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특용 약용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축산		도매시장	조합계통출하	민간계통출하	유통업체	기타			
	기타		도매시장	산지경매	유통업체	직거래	기타			

6. 추정소득, 자산, 부채

(단위 : 만원)

추정소득 계	(1)추정농업소득				(2)추정농업외소득		※ 참고	
	구분	⑱농업조수입		⑲농업소득		구분		금액
		전체 평균액	경영체추정액	전체 평균액	경영체추정액			
소계					소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종합소득(국세청)</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20px;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복지급여(보건복지부)</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20px; margin-bottom: 5px;"></div> <p>* 추정농외소득은 종합소득과 복지급여 합산액 보다 작을 수 없음.</p>	
식량					⑳ 겸업소득			
채소					㉑ 급여소득			
과수					㉒ 자본소득			
특·약용					㉓ 이전소득			
축산					㉔ 비경상소득			
기타								

자산				부채				
계	㉕고정자산	㉖금융자산	㉗재고자산	계	㉘농업용	㉙가계용	㉚겸업용	㉛기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8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에 따라 직접지불금 및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란	
읍·면·동장	농관원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경영주를 포함한 신청인 농업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내지 제39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아래의 직접지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2. 신청인의 농지소재지,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토지대장·건축물(위반건축물) 대장·농지조서 정보 3.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4.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5. 농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6.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7. 농업인 면세유 배정 및 공급정보 8.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번호 등 법인정보 9. 토지(건물)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개별(공통)주택가격,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정보 10. 소득, 자산, 부채, 급여 등의 수급정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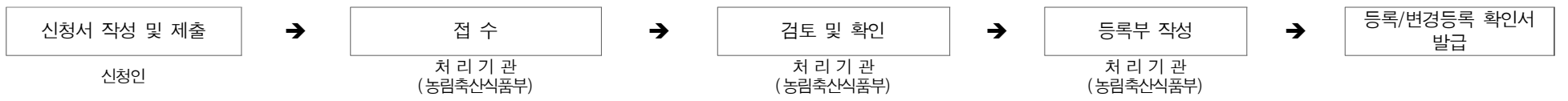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불사업 등의 농림축산식품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정부법」 제36조 내지 제39조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 []

- * 신청인은 위 직접지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신청 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신청 등록된 개인정보를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동의합니다.
- * 본 신청서에 작성한 자료와 농업경영정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자)	(대표자)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작성방법

- ①란은 법인등기부상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설립연도, 연락처,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및 전자우편은 법인사무소에서 이용하는 것을 적되, 법인이 소유·이용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대표가 사용하는 것을 적습니다.
 - ** 주요사업은 정관으로 정한 법인의 주요사업에 해당하는 []칸에 ○표시를 하되, 중복선택 가능합니다.
 - *** 체험마을 등 마을단위로 농업법인을 만든 경우에는 마을법인에 (○) 표시 합니다.
 - ****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정보를 기재합니다.
- ②란은 대표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민등록지 주소를 적습니다.
- ③란은 대표자 외 조합원(4인이상) 또는 등기이사(5인이하)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직책을 적습니다.
- ④란의 출자자수와 출자금 총액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과 준조합원,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각각 개인과 법인으로 재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⑤란은 출자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 ⑥란은 신청농지 정보 작성 순서대로 1번부터 적습니다.
- ⑦란은 해당 지번의 경영 형태에 따라 자경, 공유, 임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자경: 농업경영체가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공유: 농업경영체가 본인과 타인의 공동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임차: 농업경영체가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⑧란은 실제 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 휴·폐경 면적)을 적습니다.
- ⑨란은 시설명을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비닐온실, 육묘장으로 구분하고 그 면적을 적습니다.
- ⑩란은 직불금 대상농지 여부 해당항목을 선택하여 해당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 ⑩-1란은 (밭농업직불금 중 이모작직불금 신청자만 기재)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 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만 품목명을 적습니다.
 - ⑩-2란은 기준연도(쌀:’98~’00년/ 밭:’12~’14년)에 재배한 작물의 품목명을 적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논(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기타”로 적습니다.
 - * 1998.1.1~2000.12.31 논 재배 작물 : 벼, 미나리, 연근, 왕골
 - ** 2012.1.1~2014.12.31 밭 재배 작물 : 보리, 콩 등 재배 품목
 - ⑩-3란은 조건불리직불금 기준연도(2002.1.1.~2005.12.31.)에 해당 농지를 농업에 이용 또는 초지로 관리하였을 경우 “○”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로 표시합니다.
 - ⑩-4란은 ⑩-2란에 기타로 기록한 경우 기준연도 이전에 논 재배작물(벼, 미나리, 연근, 왕골)을 재배한 기간을 적습니다.
 - * ⑩-2,3,4란은 기존에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신청서 전산등록 시 전년도에 직불금 지급정보가 자동연계 되므로 기재 불요

작성방법

- ⑪란은 해당농지의 당해연도 직불금 신청 면적을 적습니다
 * 쌀직불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면적으로 구분하여 적으며, 밭직불의 경우 신청면적을 고정, 밭동계, 밭하계, 동계논이모작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밭직불 신청면적 중 이모작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외의 형상과 기능을 갖춘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당해연도 6월까지 해당 농지의 휴경기간에 사료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등을 재배하는 경우 신청 가능
- ⑫란은 가축사육시설의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형태, 사용용도를 적습니다.
- ⑬란은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축종, 사육규모(마릿수), 전년도 출하량을 적습니다.
- ⑭란은 전년도에 생산하여 판매한 주요 품목을 적습니다.
- ⑮란은 ⑭란에서 판매한 품목의 전년도 판매금액을 적습니다.
- ⑯은 ⑮란에 기재한 품목별 총 판매금액 중 판매처별 판매금액의 점유비율을 적습니다.
- ⑰란은 경영체가 직접 생산한 농작물을 주원료로 만든 가공품의 명칭과 판매금액을 적습니다.
- ⑱란의 평균액은 등록된 농지정보를 바탕으로 자동계산(재배면적 × 재배품목 단위면적당 수량 × 가격)되며(신청인 작성 불요) 이를 참고로 경영체별 농업조수입 추정액(농산물판매금액)을 적습니다.
- ⑲란의 평균액은 ⑱란 - 경영비(또는 × 소득율)로 자동계산(신청인 작성 불요)되며 이를 참고로 경영체별 농업소득추정액을 적습니다.
- ⑳란은 농업 외 임업, 어업, 농산물 가공업, 농업서비스, 제조업, 등 기타 산업종사를 통해 얻은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 ㉑란은 농업 외 임금 및 다른집에 고용되어 지급받은 농업수입 금액을 적습니다.
- ㉒란은 임대수입(농지, 대지, 시설물, 대농구 등), 이자·배당수입, 유가증권 매매차익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 ㉓란은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공적보조금 : 농업보조금, 농업외 연금, 실업수당, 산재보험금, 기초연금 등
 * 사적보조금 : 출타가족 또는 친인척 등 타가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보조금
- ㉔경조수입(축의금, 조의금),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이주민 주거대책비 일시금, 세금 환급금, 사례금 등 비정기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타가구로부터 얻은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 ㉕란은 토지, 건물, 기계·기구 및 비품, 대식물과 대동물등 고정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 ㉖란은 현금, 예금, 저축성 보험금, 껌돈, 빌려준 돈, 미수금, 선급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 ㉗란은 소동물, 미처분농축산물, 미사용구입자재 등 재고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 ㉘란은 생산성 자금 중 영농투자 확대(경지, 건물, 기계, 비료, 농약, 동식물, 사료구입 등)를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 ㉙란은 가계운동을 위한 생산성 자금(주거용 건물), 문화용품비, 관혼상제비, 의료비, 기타 생활비, 교육비 등 가계운동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 ㉚란은 생산성 자금 중 겸업활동(토지, 건물, 기계, 기타 겸업활동을 위한 지출)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 ㉛란은 토지, 건물 등을 빌려주고 받은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및 재산증식을 위한 생산성 자금(겸업 및 영농활동과 관계없이 재산증식을 위한 토지, 임야 등의 부동산 구입)을 위한 부채, 타인에게 채무 보증을 선 후 대신 갚게 된 부채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직불금 신청 구비서류

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면·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나.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다. 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라.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마.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바.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나. 가목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직불금 신청 구비서류

4.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1)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 2)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II. 발농업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해당 농지가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발농업보조금 지급 대상농지가 공부상 밭으로서 당해연도에 발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19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2. 신청인이 시행규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를 등록신청 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III.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의 경우 경작자증명서류(임차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경영주를 포함한 농업인(이하 '본인'이라 함)과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본인의 등록 신청정보 및 경영정보 내용의 사실여부를 판단하거나, 사업시행기관(지자체 포함) 등 공공기관에서 정책(사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대법원, 중앙행정기관(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세청 등과 그 소속·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보험업법』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허가 등을 받은 보험회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민원처리기관'이라 함),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게 수집·이용·제공·조회 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등기이사)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등기이사)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등기이사)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등기이사)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등기이사)	성명 :	서명 또는 (인)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쌀 등 직접지불제 시행으로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정과 맞춤형 농정 지원 - 맞춤형 농정지원/농업인 서비스 지원(문자메시지 발송 등)/지방농정 지원/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수집·이용할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식별정보 : 농업인·농업외종사자기타 동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직종, 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농지정보(취득, 처분, 말소, 전용 등) : 농지별 지목, 소유자, 면적, 정보보조융자금 수급, 친환경인증정보 등 농업외소득·자산·부채정보 : 종합소득정보, 각종 연금 수혜정보, 부채정보 등 기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채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지실경작 여부, 정책자금 수령정보, 가축사육정보, 농(축)산물 유통·가공정보, 농기계 보유정보, 교육이수 정보, 면세유 배정정보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말소 또는 해지(해제)일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등록말소 후에도 직불금 수혜정보 관리등을 위하여 위의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농림축산식품부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귀 농림축산식품부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문자메시지 등 수신여부	농업경영체(변경)등록 및 쌀 등 직접지불제 신청안내를 비롯한 전반적인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수신받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직불금 수령 및 맞춤형 농정지원 등에 불이익을 받거나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법원,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하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농협 등 금융기관, 공공기관, 민원처리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업무위탁기관(자)에 대한 제공 : 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탁기관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제공·조회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경영체(경영주를 포함한 농업인) 쌀직불제 등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농림사업 시행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직불금의 부정·중복 지원의 방지 등 맞춤형 농정지원 등을 위한 등록정보의 사실여부 확인,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법령상 의무이행 등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식별정보 : 농업인·농업외종사자기타 동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직종, 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농지정보(취득, 처분, 말소, 전용 등) : 농지별 지목, 소유자, 면적, 정보보조융자금 수급, 친환경인증정보 등 농업외소득·자산·부채정보 : 종합소득정보, 각종 연금 수혜정보, 부채정보 등 기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채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지실경작 여부, 정책자금 수령정보, 가축사육정보, 농(축)산물 유통·가공정보, 농기계 보유정보, 교육이수 정보, 면세유 배정정보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동의일로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말소 또는 해지(해제)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맞춤형 농정지원,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직불금 중복 지원 방지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공·조회동의 여부	귀 농림축산식품부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귀 농림축산식품부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직불금 수령 및 맞춤형 농정지원 등에 불이익을 받거나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m ²)	농지이용면적(m ²)																										
	읍·면·동	리·통	지번		작물재배	휴경																									
<p>「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청인이 농업 소득보전직접지불금(밭농업)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5%;">구분</th> <th style="width: 25%;">성명</th> <th style="width: 25%;">생년월일</th> <th style="width: 10%;">날짜</th> <th style="width: 15%;">서명</th> </tr> </thead> <tbody> <tr> <td>농지소재지 ○○리(통)장</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5">*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td> </tr> <tr> <td>농지소재지 거주자</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농지소재지 거주자</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p>*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p>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리(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리(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실경작 입증기준을 강화하여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경작사실 확인 안내

(뒤쪽)

제출 및 처리기관	읍·면·동, 시·군·구
근거 법규	<p>○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농업소득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① (생략)</p> <p>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농지원부(農地原簿)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2. (생략)</p> <p>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p> <p>가. 법 제8조제2항에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p> <p>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2) ~ 6) (생략)</p> <p>나. (생략)</p> <p>4. (생략)</p> <p>③ (생략)</p>

※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읍·면·동)	(시·군·구)
<div data-bbox="205 1393 485 1456"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20px;">확인서 작성</div> <div data-bbox="205 1700 485 1762"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20px;">형사처벌</div> <div data-bbox="205 1841 485 1904"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등록내용 확인</div>	<div data-bbox="625 1393 904 1456"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20px;">접수</div> <div data-bbox="625 1525 758 1619"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right: 10px;">허위 확인</div> <div data-bbox="772 1525 904 1619"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사실 확인</div> <div data-bbox="625 1834 904 189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20px;">등록증 발급</div>	<div data-bbox="1074 1700 1353 1762"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20px;">등록대장 등록</div>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m ²)	농지이용면적(m ²)		
	읍·면·동	리·통	지번		작물재배	휴경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청인이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발농업)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농지 소재지 ○○리(통)장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실경작 입증기준을 강화하여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경작사실 확인 안내

(뒤쪽)

제출 및 처리기관	읍·면·동, 시·군·구
근거 법규	<p>○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농업소득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① (생략)</p> <p>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농지원부(農地原簿)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2. (생략)</p> <p>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p> <p>가. 법 제8조제2항에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p> <p>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2) ~ 6) (생략)</p> <p>나. (생략)</p> <p>4. (생략)</p> <p>③ (생략)</p>

※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읍·면·동)	(시·군·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확인서 작성</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접수</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0px; height: 40px; text-align: center;">허위 확인</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0px; height: 40px; text-align: center;">사실 확인</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형사처벌</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등록대장 등록</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등록내용 확인</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등록증 발급</div>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m ²)	재배품목·이용면적(m ²)		
	읍·면·동	리·통	지번		재배품목	이용면적(m ²)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2호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4제1항제2호, 제40조의5에 따라 신청인이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1년 이상 신청 대상 농지를 경작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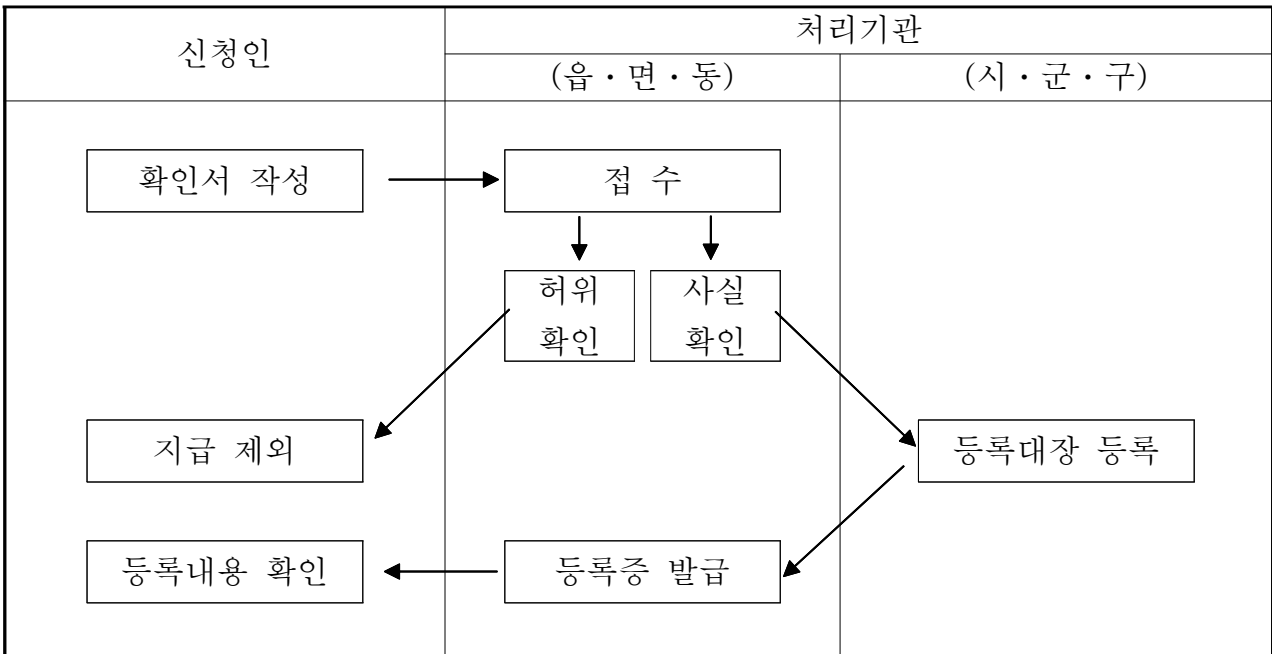
※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실경작 입증기준 강화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경작사실 확인 안내

(뒤쪽)

제출 및 처리기관	읍·면·동, 시·군·구
근거 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0조

※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7호 서식]

번호 제 호

년도 발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①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②입금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③ 신 청 내 용	농지 소재지			④농지이용면적 (㎡)			대상농지여부			
	읍·면	리·동	지번 (가지번)	밭 대상 품목 재배	타 작물 재배	휴경	논고정직 접지불금	조건불리보 조금	경관보전 보조금	농지전용 등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5 규정에 의하여 발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제외사유 :

20 년 월 일

시장
군수 [인]
구청장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년 밭농업직불보조금 신청 현지 조사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 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m ²)	신청품목 및 면적(m ²)		조사결과 (품목 및 면적 등 기재)				비고 (불일치사유)
법정동명	본번	부번		신청품목	면적	면적	①	②	③	
				밭고정	-	면적	①	②	③	
				품목명						
				밭고정	-	면적	①	②	③	
				품목명						
				밭고정	-	면적	①	②	③	
				품목명						

※ 밭고정의 경우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①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관리 ②이웃 농지와 경계 설치 및 관리 ③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여부를 조사결과란에 면적 및 “여” “부”로 기재

※ 밭재배 26개 품목 및 논재배 식량·사료작물의 경우 재배품목 및 면적 등이 사실과 같을 경우 조사결과란에 “일치”로 기재

3. 신청인(배우자) 확인

- 등록신청 농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 불일치된 사항은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변경등록에 동의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경영주에 한함)
- *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작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배우자) : (인)	연락처 :
--------	--------------------	-------

4.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	-----------

<특이 사항>

※ 특이사항 기록내용 : 신청자가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유, 전화녹취 일시·수화자 성명·통화내용, 농가면담 사항 등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별지 제10호 서식]

농약 잔류검사 결과 보고(통보)

품 목	시·군·구	읍·면·동	등록신청		검사 결과			
					적합		부적합	
			농업인(명)	면적(m ²)	농업인(명)	면적(m ²)	농업인(명)	면적(m ²)
합계								

※ 참고사항(조치 경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 시장·군수·구청장
 - 지원·사무소장은 불이행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 세부내용을 첨부하여 통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 시·도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00월 0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 (인)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실적

사군구	부당수령자 현황			부당수령금 회수 현황			등록제한 현황	
	인원	면적 (m ²)	금액(천원)	인원	면적 (m ²)	금액(천원)	인원	면적 (m ²)
00시								

※ 1ha = 10,000m²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발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증 발급 결과 보고

시·군·구	등록 현황		경작 현황				임차현황	
	인원	면적 (m ²)	계 (m ²)	대상품목 재배면적 (m ²)	대상품목 이외면적 (m ²)	휴경 (m ²)	인원 (명)	면적 (m ²)
합계								

※ 1ha = 10,000m²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읍·면·동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발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제한 실적 보고

시군구	합 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지급대상자 요건 미흡		재배품목 불일치		농약토양검사 부적합	
	인 원	면적 (m ²)	인원	면적 (m ²)	인원	면적 (m ²)	인원	면적 (m ²)	인원	면적 (m ²)
00시										

※ 1ha = 10,000m²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발농업직불금(고정·26개품목·논이모작) 등록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 >

발농업직불금(고정·26개품목·논이모작) 신청자 내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절-----취-----선-----

<접수번호 : >

발농업직불금(고정·26개품목·논이모작) 등록신청서 접수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대상농지 및 면적 등은 발농업직불금(고정·발재배 26개 품목·논재배 식량·사료작물) 지급 최종 확정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

20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